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07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3.

발 의 자:박 정·유정주·이규민

이병훈 • 이재정 • 주철현

홍정민 · 김민기 · 김병욱

김정호 · 도종환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예술원(이하 "예술원"이라 함)은 총회를 통하여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. 그러나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총회 참여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마련되어 있지 않아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장기간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. 결국, 예술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지 못하여 예술원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있음.

이에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지속 및 반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, 예술원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5항 신설). 법률 제 호

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회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회의) ① ~ ④ (생 략)	제11조(회의) ① ~ ④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⑤ 회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
	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
	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
	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
	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
	수 있다. 다만, 제5조에 따른
	회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에 대
	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